

보 통 보 협 악 관
(무 배 당시 생활 암 보 협)

보통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 단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 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 나) 주피보험자의 만 22세이하의 비혼자녀

제 3 조 【 종피보험자 자격의 힘들 및 상실】

- ① 이 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날을 "보험계약일"로 보며, 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에 제 2조 제 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 일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 ② 계약의 계약일 다음날 이후에 제 2조 제 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 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 ③ 계약의 계약일 이후에 재적, 결혼 또는 만 23세에 달하여 제 2조 제 2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 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급의 장해(이하 "제 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경우 새로운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 췈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 ④ 계약성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 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

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정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8조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5호에서 정한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등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 제 1항, 제 2항 및 제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1.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주피보험자의 자녀로 출생하여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제 1항 및 제 5항의 책임개시일과 출생한 날 중 늦은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제 1호의 경우 이외에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암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이외의 원인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⑦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가족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 안내장(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제 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7 조 【 계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개약일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주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로 한 경우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1호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 2조에서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제 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 만기급여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 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암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진단급여금을 지급(다만, 피보험자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4.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을 지급
5.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여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3일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
6.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급여금을 지급

- ② 제 4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 1항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책임개시일의 전일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 1항 제 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제 3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 계속증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④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 2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 1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⑤ 제 1항 제 1호, 제 2호, 제 6호 및 제 4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증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⑥ 제 1항 제 2호, 제 6호 및 제 4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⑦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2호 또는 제 4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9 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 4의 분류번호 1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0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내 병원의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정한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1조 【 배당금】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으로 개약자 배당금(환경 배당금 포함)이 없습니다.

제 12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진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리거나 그 잔액에 대한 차회이후의 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또는 금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범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정해상태 또는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 가입자의 고지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정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정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사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

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정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들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정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정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의 2 【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정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 보험료의 납입】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말행한 잉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 6 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의자는 제 8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야 합니다.

제 1 7 조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 8 조 【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제 1 8 조의 2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자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 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자금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체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됩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⑤ 제 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제 19 조 【효력이 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범위내(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체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조 제 3항, 제 4조, 제 5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0 조 【보험금등 청구서의 구비서류】

수이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방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등)
3. 입진단서 (암진단확정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탁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2 1 조 【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제 8조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당해 보험년도중 미경과기간에 대하여는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신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만기환급형의 경우 회사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 ⑥ 만기급여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 2 조 【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마지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인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 3 조 【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 3 조의 2 【 계약연령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 2 4 조 【 계약자의 원의해지 】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 5 조 【 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성계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제 2 5 조의 2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 6 조 【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 7 조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간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8 조 【 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개 약자에 대하여 무로로 보험증권의 정정, 매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 2 9 조 【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개 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범인이 아닌 개 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 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 0 조 【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 액 10万 원, 20년 만기, 40세가입, 전기월납)

【 개인계약】

구 분		1년	5년	10년	20년
남 자	순수보장형	납입액 환급액	1,368 0	6,840 2,912	13,680 5,838
	만기환급형	납입액 환급액	2,352 313	11,760 8,523	23,520 19,979
여 자	순수보장형	납입액 환급액	900 0	4,500 1,079	9,000 2,268
	만기환급형	납입액 환급액	1,572 0	7,860 4,826	15,720 11,849
					31,440 31,440

【 가족계약】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 동시생존시)

구 분		1년	5년	10년	20년
남 자	순수보장형	납입액 환급액	1,656 0	8,280 3,613	16,560 7,010
	만기환급형	납입액 환급액	2,844 690	14,220 10,425	28,440 24,118
여 자	순수보장형	납입액 환급액	1,692 0	8,460 3,537	16,920 6,637
	만기환급형	납입액 환급액	2,928 751	14,640 10,630	29,280 24,516
					58,560 58,56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개인계약 - 순수보장형)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 보 험 금	피 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체 약에 의해 재해로 인한 장애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입거나 그 암으로 또는 제 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암 진 단 금	피 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체 약에 의해 재해로 인한 장애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입거나 그 암으로 또는 제 1급의 장애가 되었을 때 (다만, 암 진단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암 입 원 금	피 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체 약에 의해 재해로 인한 장애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입거나 그 암으로 또는 제 1급의 장애가 되었을 때 (다만, 암 입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	[3일 초과 보험 입원일수 1일당]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
암 수 술 금	피 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체 약에 의해 재해로 인한 장애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입거나 그 암으로 또는 제 1급의 장애가 되었을 때	[1회 수술당]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사 급 금	피 보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체 약에 의해 재해로 인한 장애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입거나 그 암으로 또는 제 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개인 개약 - 만기 환급형)

(가족개약 - 순수보장형)

(가족개약 - 만기화급형)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약
말 기 급여금	주 피 보 험 자 가 만 기에 살 야 있 을 때 (제 1 급 의 만 청 해 상 태 는 살 아 애 있 을 때)	인 비 액 남 입 한 보 험료 의
사 보 험금	주 피 보 험 자 인 하 어 그 러 는 사 체 진 이 시 기 입 화 정 명 되 기 나 재 매	주 피 보 험자 : 험 가 입 금 액 의 100% 개 해 비 액 보 험자 : 험 가 입 금 액 의 60%
알 진 이 단 금	주 피 보 험 자 는 중 체 보 험 시 가 입 금 후 정 은 지 제 4 조 죽 으로 (다 만 회 압 보 기 입 전 친)	주 피 보 험자 : 험 가 입 금 액 의 50% 개 해 비 액 보 험자 : 계 약 보 험 가 입 금 액 의 30% 해 - 자녀 : 계 약 보 험 가 입 금 액 의 20% 해
알 위 이 원 금	주 피 보 험 자 는 중 체 보 험 시 가 입 금 후 정 은 지 제 4 조 죽 으로 (다 만 회 압 보 기 입 전 친)	[3 일 총 과 보 험자 : 원 일 수 1 일 당] 개 해 비 액 보 험자 : 험 가 입 금 액 의 1% - 자녀 : 계 약 보 험 가 입 금 액 의 0.6% 해 - 자녀 : 계 약 보 험 가 입 금 액 의 0.4% 해
알 수 이 술	주 피 보 험 자 는 중 체 보 험 시 가 입 금 후 정 은 지 제 4 조 죽 으로 (그 암 의 반 치 를 보 입 전 때)	[1 회 수 술 보 험자 : 1 일 당] 개 해 비 액 보 험자 : 험 가 입 금 액 의 20% - 자녀 : 계 약 보 험 가 입 금 액 의 12% 해 - 자녀 : 계 약 보 험 가 입 금 액 의 8% 해
사 급 어 류	주 피 보 험 자 는 그 외의 원 인 으로 장 해 상 태 제 1 급 의 사망 하 였 거나, 때	주 피 보 험자 : 험 가 입 금 액 의 20% 개 해 비 액 보 험자 : 험 가 입 금 액 의 12%

(별표2)

제 해 분류 목록

제해라 항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 30호, 1979.

1. 1시행) 중 "손상 및 중독의 외부요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류 항 목

분류 항 목	분류 번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도로교통기판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판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판사고	E 840 - E 845
7. 나쁜 곳에 봉름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콘돌라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증후	E 850 - E 858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일회로기 피부암은 제외 한다.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증독	E 860 - E 869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년자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 한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나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 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침장해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적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 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탄산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50 ~ E 969
18. 범적개입 나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 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에 망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3)

장해 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 장해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 아야 할 때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 았을 때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솔가량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에 또 다른 세 4급의 5부터 11까 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p>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p> <p>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4급	<p>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중추신경계 또는 경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p> <p>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때</p> <p>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p> <p>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p> <p>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 5 급	<p>1. 할 필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할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할 빨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9.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10. 코가 결속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 6 급	<p>1. 할 필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할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p> <p>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할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정해 등급 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뛰벗한 장해”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나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ㆁ, ㅂ, ㅍ), 치설음 (ㄴ, ㄷ, ㅌ),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인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
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
도를 각각 a, b, c, d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
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기능 영역이 생리적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

(근위지질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 (지질간관절)]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 (발절풀) 의 1/2이상, 그 외 발가
락은 끝에서 첫째관절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관절 (중족지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 (근위
지질간관절)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복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치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 제 9회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140 ~ 149
2. 소화기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150 ~ 159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160 ~ 165
4. 뼈, 결합조직, 피부 및 유방의 악성신생물	170 ~ 175
5. 미토생식기의 악성신생물	179 ~ 189
6. 기타 및 성체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90 ~ 199
7. 림프조직 및 조혈조직의 악성신생물	200 ~ 208

제10회 이후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